

## 국회도서관장 임명에 대한 청원서

18대 국회 개원에 이어 국사에 골몰하시는 귀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식기반사회의 국회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수집·관리와 활용, 그리고 의원들에 대한 입법정보의 조사제공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인 도서관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에는 이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건국 60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국회도서관장에 도서관인이 임명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회도 모든 분야에서 원칙을 찾아 바로 세워야 할 때라 사려됩니다.

아울러 OECD 가입국가인 우리나라도 선진국 의회도서관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도서관 본연의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활동을 담보하려면 18대 국회의 국회도서관장직에 도서관에 대한 배경을 지닌 인사가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여부가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오늘날, 국회도서관이 참다운 의회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명실상부한 자격을 갖춘 도서관인에 의한 도서관운영이라는 우리 도서관계와 학계의 염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008년 7월 28일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김태승 拜上

## 인천문화재단의 도서관위탁운영에 대한 한국도서관협회의 입장

존경하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인천광역시에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품격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고, 인천시민의 문화생활과 문화적 성숙에 기여하시는 귀 기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1945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과 권익증진,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신축예정인 구월동 인천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영종도서관, 수봉도서관 등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성숙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금년 10월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선진일류국가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가 공공부문 민영화의 일환으로 인천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하고 있음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도서관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과 시민,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전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량경영과 시장원리를 적용한 위탁운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와 결과들이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전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협회는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 시도를 초기 단계부터 반대하여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으로 예정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인천시립도서관 위탁운영의 사안을 '도서관수탁사업승인안'으로 재단 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지자체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추진되어 온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가의 도서관 정책 구현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평등권을 담보하는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민간위탁 시도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천문화재단의 위탁자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재삼 인천광역시가 도서관을 직영하도록 결정하는 인천문화재단 이사회의 현명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8년 7월 24일

한국도서관협회장  
김태승 拜上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 2008-1호

도서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장

##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와 연간출판(예정)목록,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과 필요시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한다.

[한국도서번호 표시방법 예시]



[한국연속간행물번호 표시방법 예시]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출판(예정)목록

일련 번호	출판(예정)년월일	서 명 ( 책 제 목 )	판 차 사 항	비 고